

## 사채권자집회 결의

1. 상장채권명	웅진에너지 2USD (KR6103131167)
2. 집회일자	2015-12-11
3. 결의사항	<p>제 1 호 의안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본건 사채의 만기는 2017년 12월 19일로 변경한다.</li> <li>- 본건 사채권자집회 결의일까지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,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 통지의 권한을 수탁회사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 회사에게 위임한다.</li> <li>- 본건 사채권자집회 결의일로부터 그 효력 발생일까지의 사이에 본건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관한 법원 인가 지연으로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을 취소하고, 기한이익상실 취소통지의 권한을 수탁회사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 회사에게 위임한다.</li> <li>- 본건 사채권자집회 결의일로부터 그 효력 발생일까지의 사이에 본건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관한 법원 인가 지연으로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 원인사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,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 통지의 권한을 수탁회사인 엔에이치투자 증권 주식 회사에게 위임한다.</li> <li>- 본건 사채의 이율은 사채권자집회 결의일부터 연 3%로 변경한다.</li> <li>- 본건 사채모집위탁계약 제 1-2 조 제 14 호 가항(2) (자)내지 (카), 제 2-3 조(재무비율등의 유지), 제 2-4 조(담보권설정 등의 제한), 제 2-9 조(발행회사의 보장사항)는 삭제한다.</li> <li>- 본건 사채모집위탁계약 제 1-2 조 제 14 호 가항 및 사채 인수계약 제 3 조 제 20 호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다음의 항목을 본건 사채모집위탁계약 제 1-2 조 제 14 호 가항 (5) 및 사채인수계약 제 3 조 제 20 호 (3)으로 각 추가한다 [발행회사가 본건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신주 발행을 결정하고 사채를 신주로 전환 내지 상환하거나,</li> </ul>

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를 신주 인수대금과 상계하거나 현물출자 하는 방법으로 그 신주 인수를 청약하는 경우, 그에 상응하는 사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는 것으로 한다.]

- 본건 사채모집위탁계약 제 1-2 조 제 9 호 및 사채인수계약 제 3 조 제 10 호에 의한 이자의 지급기일은 만기시까지 매년 3 월, 6 월, 9 월, 12 월 19 일로 하며, 만기일 직전 이자지급기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이자는 일할 계산하여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.

-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법원 인가결정 등으로 확정되는 날부터 60 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사채총액 중 사채권자의 선택에 따른 일정액을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(이하 "신주")으로 전환 내지 상환할 수 있도록 하되,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발행회사가 별도로 정한다.

- 신주의 발행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르되, 발행가액의 경우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청약일 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%의 할인 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한다

- 발행회사가 상기 신주 발행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 출자전환 대상 채권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.

- 본건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사채인수계약의 원리금 지급대행자 및 지급사무처리장소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, 그에 따른 절차는 사채권 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 등으로 확정되는 날 이후 지체 없이 이행한다

[원리금 지급방법 및 지급사무처리장소: 사채의 원리금은 사채권자가 발행회사 자금&IR 팀(아래 신고처)에 사채 등록필증 제출과 함께 신고한 원리금 수령계좌로 발행회사가 직접 지급하며, 사채권자는 사채를 양도 하는 등의 사유로 원리금 수령계좌를 변경하려 할 경우 이를 즉시 상기 절차에 따라 발행회사에게 재신고해야 한다.]

\* 웅진에너지 주식회사 자금&IR 팀 신고처:  
(주소: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 2 로 37 자금&IR 팀)

	▶ 원안대로 가결	
4. 확인일자	2015-12-11	
5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<p>- 상기 '3.결의사항'의 의안은 12 개항 전부가 1 개의 안건으로 각 항목별 찬반의사 표시는 불가능하며, 1 개의 의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사표시의 결과입니다.</p> <p>- 상기 의안의 결의와 관련하여 본점소재지내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인가신청 예정이며, 최종 효력 발생은 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발생될 예정입니다.</p>	
	※관련공시	<p>- 상기 의안의 최종 효력 발생일에 웅진에너지 홈페이지(www.woongjinenergy.com) 공고를 통하여 본 사채의 '사채권자 신고'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사채권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2015.11.19 사채권자집회소집 (웅진에너지 제 2 차 변동금리부 외화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)</p>